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공무상 질병에 대한 급여 산정 기준일 변경〉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75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 2 |
| 2. 검토의견 .....          | 4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소희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8.
3. 회부연월일 : 2025. 9. 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함.

그런데 사고로 인한 공무상 부상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용이한 반면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무상 질병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등,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 Ⅲ.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무상 질병의 경우 급여 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에 관련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br>-----<br>-----<br>-발생한 날(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br>-----<br>--. -----<br>-----<br>-----<br>-----<br>-----<br>-----<br>-----<br>-----<br>-----<br>----- |

|                                                                                            |                                                                                                    |
|--------------------------------------------------------------------------------------------|----------------------------------------------------------------------------------------------------|
| <p>· 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p> <p>1. ~ 5. (생략)</p> <p>② · ③ (생략)</p> | <p>-----</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 2. 검토의견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sup>1)</sup>

그런데 공무상 질병의 경우, 공무상 사고와 달리 급여 사유 발생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결과 소멸시효가 일찍 시작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적절한 보상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상 질병에 대하여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및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공무상 질병 관련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 보장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개정되는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리하거나 제도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sup>2)</sup> 개정되는 제10조 이하 모든 조문에서도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는 기준소득월액(제10조제1항) 및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제10조제2항), 연금의 지급기간(제13조제1항), 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제54조제1항)에 모두 적용되게 됨.

---

2) 개정안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

《개정안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문》

| 구분                                                                                                                 | 관련 조문                                                                                                                                                                                                                                                                                                                                                                                |
|--------------------------------------------------------------------------------------------------------------------|--------------------------------------------------------------------------------------------------------------------------------------------------------------------------------------------------------------------------------------------------------------------------------------------------------------------------------------------------------------------------------------|
| <p><b>기준소득월액의 산정</b><br/>(제10조제1항)</p> <p><b>및</b></p> <p><b>공무원 전체 평균</b><br/><b>기준소득월액의 산정</b><br/>(제10조제2항)</p> | <p><b>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b>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6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 미만이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p> |
| <p><b>연금의</b><br/><b>지급기간</b><br/>(제13조제1항)</p>                                                                    | <p><b>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b>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30조에 따른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p>                                                                                                                                                                                                                                         |
| <p><b>급여 소멸시효</b><br/><b>기산점</b><br/>(제54조제1항)</p>                                                                 | <p><b>제54조(시효)</b>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p>                                                                                                                                                                                                                                                         |

자료: 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대하여 공무원 질병을 직접적인 요건으로 급여 사유가 발생하는 요양급여·장해급여·순직유족급여<sup>3)</sup>를 중심으로 ① 기준소득월액 산정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 가. 재활운동비

기준일, ② 연금의 지급기간, ③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나누어 살펴본바, 논의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기준소득월액 및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퇴직일의 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sup>4)</sup> 현재의 급여액 산정 시점을 이보다 이전 시점인 질병의 최초 진단일로 정할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임.

둘째, 재해보상급여 중 장해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의 경우 공무상 질병의 발생 외에도 각각 퇴직 및 사망이라는 추가적인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질병의 최초 진단일을 급여 사유 발생일로 할 경우 급여 요건(퇴직 또는 사망)이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게 되어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게 됨.

- 
- 나. 심리상담비
  - 3. 장해급여
    - 가. 장해연금
    - 나. 장해일시금
  - 4. 간병급여
  - 5. 재해유족급여
    - 가. 장해유족연금
    - 나. 순직유족급여
      - 1) 순직유족연금
      - 2) 순직유족보상금
    -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6. 부조급여
    - 가. 재난부조금
    - 나. 사망조위금
-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7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② 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 기준일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한 날의 전날로 본다.

셋째, 급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질병의 최초 진단일로 일률적으로 변경할 경우, 급여 청구권이 축소되거나 제약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양급여의 경우 현재는 각각의 요양 행위별로 소멸시효(요양급여:3년)를 기산하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청구가 가능한 반면, 질병의 최초 진단일로 변경할 경우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요양 청구권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으며,

장해급여 및 순직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퇴직·사망이라는 급여 발생 시점의 이전 시점에 소멸시효(장해급여·순직유족급여:5년)가 시작되어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개정안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배치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부작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질병 관련 청구인과 유족의 권리 보장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공무상 질병의 급여 사유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최초 질병 진단일”로 명시할 경우,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점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앞당겨 오히려 공무원과 유족의 급여 산정액이나 급여 청구권을 축소시킬 수 있고, 특히 장해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의 경우 급여 지급 시점이 해당 급여의 지급 요건(퇴직 또는 사망)과 배치되어 법 해석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
|--------------|
| 문 의 처        |
| 02)6788-5342 |